

□ 말레이시아

- **MAT 체결대상:** 연방정부, 주정부, 정부부처, 정부기관, 토착민과 지역공동체

※ 동일한 전통지식이 1개 이상의 IPLC와 관련된 경우 모든 보유자가 지정한 대표 또는 기구를 통해야 하며, 모든 보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책임기관이 허가한 경우 신청자가 확인한 보유자의 대표 또는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

- **이익공유**

- 금전적 이익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설치한 자금을 기탁하고 책임 기관은 이러한 지불금 또는 그 일부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사용
- 연방정부나 주 당국이 자원 제공자가 아닌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이익공유협정에 따른 금전적 혜택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지급 요구 가능

- **법적근거**

-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법 제22조, 제23조

□ 베트남

- **MAT 체결대상:** 개인 또는 기관

- **이익공유**

- 이익공유의 지분은 제품의 연매출 1% 이상, 파생물 이전 또는 지식

재산권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2% 이상

- 공유된 금액의 30%는 유전자원 제공자가, 70%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귀속

○ 법적근거

-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제3장
- 같은 법 관련서식 별지 3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

□ 부탄

○ MAT 체결대상

- 보호산림지 또는 보호구역일 경우 산림 및 공원 서비스부
- 지역산림: 지역공동체
- 식품과 농업을 위한 현지 유전자원, 민간산림 유전자원: 관련공동체 관리인 및 개인
- 현지의 수집된 유전자원: 국가연락기관

※ 국가연락기관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고 감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(부탄 생물다양성법 제73조)

○ 이익공유

-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이익공유펀드 유입

○ 법적근거

- 부탄 생물다양성법(안) 제6장

□ 인도

○ MAT 체결대상

- 접근 신청서 양식에 이익공유 방법과 계획을 함께 제출
- 생물다양성총국 심사 및 승인

○ 이익공유

- 생물다양성총국펀드에 지불된 금전적이 이익을 생물다양성총국에서 제공자에게 전달

○ 법적근거

- 생물다양성법 관련규정 및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

□ 중국

○ MAT 체결대상

- 생물자원 점유자
- 명확한 점유자가 없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지정된 전문기관

○ 이익공유

- 발생이익의 0.5%, 10%를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에 납부

○ 법적근거

- 생물다양성법 관련규정 및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

□ 스페인

○ MAT 체결대상: 국가책임기관과 제공자

- 해양유전자원: 농업수산물식품환경부 산하 해안 및 해양지속청
- 공공재산 유전자원: 해당 공공재산이 속해있는 국가행정국 기관
- 국가 소유, 현지의 보존 유전자원: 현지의 기구의 행정기관
- 1개 이상의 자치공동체의 토지를 포함지역 유전자원: 해당지역의 자치 공동체 또는 공동체가 정하는 기관
- 그 외: 상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이 위치한 자치공동체가 정하는 기관

○ 이익공유: 관련규정 없음

○ 법적근거

-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/2017 제5조 (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국가책임기관)
- 같은 법 제7조 (이용목적이 상업적인 경우,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절차)

※ 같은 법 제7조가 상호합의조건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

□ 기타

- 핀란드: 사미족의 전통지식 이용 시 사미의회와 계약체결하고 책임기관이 이를 승인
- 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은 ABS 법령은 없으나 접근을 위한 개별법의 규정들이 있으며 MAT 관련 별도 규정은 없음